

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

(의안번호 제2758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03. 07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4. 03. 08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4. 03. 21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도시교통과장 이주열)

가. 제안이유

-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(2024. 6. 27.까지)임에 따라,
- 「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에 따른 전문성과 기술능력을 겸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위탁근거

- 「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9조(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)
- 「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의2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
-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다. 위탁내용

- 위탁사무: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·운영
- 위탁기간: 3년

○ 위탁예산: 없음

○ 시설현황(2024. 3. 기준)

1)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78개소 / 행정용(저단형) 게시대 51개소

○ 위탁방법: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 연장을 통한 민간위탁 협약 체결

○ 위탁업무 내용

1) 현수막 민원업무 대행(접수, 검인수수료 징수, 신고 및 수수료 납부 등)

2) 지정게시대 시설물 관리

3) 게첨 현수막 유지·관리

4) 불법 현수막 신고 및 철거 등

라. 기대효과

○ 현수막 게시 및 철거를 수탁업체가 대행함으로써 게시대 순환을 제고

○ 관리 기관의 일원화로 게시대 게시 형평성 확보 및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로 신속한 정비 가능

마. 참고사항

○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: [참고 1]

○ 관계법령: 「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9조, 제19조의2,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정제)

○ 제출 사유

- 본 동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,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 예정(2024. 6. 27.)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재 선정하기에 앞서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음.

○ 주요 내용

-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[참고] 위탁사무 개요

- 위탁사무: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·운영
 - 현수막 민원업무 대행(접수, 검인수수료 징수, 신고 및 수수료 납부 등)
 - 지정게시대 시설물 관리
 - 게첨 현수막 유지·관리
 - 불법 현수막 신고 및 철거 등
- 대상시설: 총 129개소(2024. 3. 기준)
 -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78개소, 행정용(저단형) 게시대 51개소
- 위탁기간: 지정일로부터 3년
- 위 탁 비: 없음
- 선정방법: 공개경쟁(또는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위탁기간 연장)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, 위탁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,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은 적정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3. 21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